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등〉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2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등(제9조제1항)	3
2.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무 부과(제10조제2항 신설)	9
3. 개정안 부칙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 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

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Ⅲ. 검토의견

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등(제9조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수업 시간 수 및 업무분장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u>지정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 ----- ----- ----- ----- ----- ----- <u>지정하여</u> <u>야 한다. 이 경우 학습지원 담</u> <u>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u> <u>위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u> <u>수업 시간 수 및 업무분장의</u> <u>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②・③ (생략)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때 성취수준 1수준¹⁾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²⁾ 교과별 ‘1수준’ 비율(%) >

구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7	2.6	7.1	3.2	5.0	9.9	4.1
2018	4.4	11.1	5.3	3.4	10.4	6.2
2019	4.1	11.8	3.3	4.0	9.0	3.6
2020	6.4	13.4	7.1	6.8	13.5	8.6
2021	6.0	11.6	5.9	7.1	14.2	9.8
2022	11.3	13.2	8.8	8.0	15.0	9.3
2023	9.1	13.0	6.0	8.6	16.6	8.7
2024	10.1	12.7	7.2	9.3	12.6	6.5

자료: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결과 발표자료 바탕으로 제작
표준오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발표자료 참고

- 1) 교과별 성취수준은 4단계로 구분되며 그중 1수준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여겨짐.
-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매년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3% 대상 표집평가(국어·수학·영어)를 시행하여 4(우수)~1(기초학력 미달)수준으로 진단

□ 「기초학력 보장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상담결과 등에 근거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또한 법 제9조는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⁴⁾.

□ 이에 따라 지정된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업무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 등 학습지원교육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에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4)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8조제2항)5).

□ 이처럼 현행법령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을 학교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하면서, 학습지원담당교원의 근무 여건 조정 또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수의 담당교원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6), 개정안의 제안이유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제 학습지원 담당교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7).

□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2022.10.)하였는데, 동 계획에서도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과중됨에 따라 교원이 기초학력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5)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6) 교육부는 현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예: 학습지원 담당교원 1인이 담당하는 최대 학습지원 대상학생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는데, 현재 2025년 기준 학습지원 담당교원으로 총 12,916명이 지정되었고, 모든 초·중등학교에 1명 이상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지정되어 있음.

7) 학교현장에서는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행정 지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기초학력 지원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임(김경령, 김지영, 학습지원 담당교원 직무 분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024. Vol. 27, No.4, pp186~187).

- 따라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및 근무 여건 조정 의무화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량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안에서 내실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이루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⁸⁾.
- 다만, 담당교원의 의무 지정과 담당교원에 대한 수업시간 수 및 업무분장 조정이 타 교원의 업무 과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교원의 추가 정원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또한,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만으로 실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수·진단·지원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⁹⁾,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는 담당교원을 전담교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개정안¹⁰⁾이 회부되어 심사 중인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8) 입법례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입법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9) 김형미,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에서 학습지원 ‘전문교원’ 배치로”, 2023.09.24., 제주일보

10)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 교육부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대다수는 교과·담임교사를 겸임하여 학습지원교육 관련 행정업무¹¹⁾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담당교원을 실질적으로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맞춤형·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문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고, 동 기초학력 전문교원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 업무 분장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 시도교육청: 대구, 광주, 경남, 제주 > 신중검토

-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여건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바, 일률적인 수업 시간, 업무 조정은 교원 운영의 경직성 초래 우려

< 단위 학교 >

- 신중검토 :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지정의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유연성 저해 우려
- 일부수정 :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구체적인 업무 경감 방안 제시 필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중검토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이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근무 여건 조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교원단체: 부산교사노동조합 > 신중검토

- 교원 정원 확대,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 가중 우려

1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교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진단계획수립 등

2.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무 부과(제10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생략) <u><신설></u>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③ ----- ----- ----- ----- ----- -----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5항에----- -----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 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¹²⁾
- ☐ 이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요건을 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교육대학으로 제한하고,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요건을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대학 및 교육대학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¹³⁾.

12)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3)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제10조(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안전망은 교육부-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개별교실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로 볼 수 있으며,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는 중앙의 교육부 및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와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연결하고, 광역교육청과 기초교육지원청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전달체계로 볼 수 있음¹⁴⁾.

□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운영중이나¹⁵⁾,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경우 총 5개의 시·도에서만 지정·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⁶⁾¹⁷⁾

14) 신하영·박소영,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40권 6호, p123

15)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고시 제2022-9호, 2022. 4. 20., 제정]
제2조(지원센터 지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원센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한다.

16) 인천(경인교대), 광주(광주교대), 대전(한남대), 경기(경기도교육연구원), 충남(공주교대). 서울시의 경우 2026년도에 지정 및 운영 예정임.

17)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없는 시도의 경우 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이 운영중이며, 학생·학부모 또는 학교 의뢰로 학습상담·코칭, 경계선 지능·읽기 곤란 등 전문 검사, 학부모 상담, 문해력·수리력 지원,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등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국 시도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현황('25년 기준)](교육부 제공)

시·도	설치 현황(개소)			시·도	설치 현황(개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계		교육청	교육지원청	계
서울	1	11	12	강원	1	18	19
부산	1	5	6	충북	1	6	7
대구	1	5	6	충남	2	14	16
인천	1	5	6	전북	1	14	15
광주	0	2	2	전남	0	22	22
대전	1	2	3	경북	1	22	23
울산	1	2	3	경남	1	18	19
세종	1	0	1	제주	1	2	3
경기	0	25	25	합계	15	173	188

- 한편, 현행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안 제10조제2항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은 개별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보 이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특정 지역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가 금 지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개별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⁸⁾.
- 다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 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18) 입법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역 단위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음.

[입법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전국 모든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현행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과 함께 시도의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1항을 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시·도교육청>

- 경남, 제주 : 신중 검토
 - 학생 수, 학업성취도, 교육 격차 등을 시도센터 지정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유연하고 특색있는 시도센터 운영 저해가 우려되고, 지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시도센터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대구 : 일부 수정
 -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지정·운영 뿐만 아니라, 자체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중 검토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10조의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서는 시도별 1개소 지정·운영 필요

<교원단체: 부산교사노동조합> 신중검토

-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자문·연수·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현장의 기초학력 업무 경감 효과는 제한적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업무분장 조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정원 확보 등이 고려되는바,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